

# 중금살리는 하도급정책

박동식(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국장)

뉴밀레니엄의 문턱을 갓 넘어선 우리 경제의 화두는 시장경제의 창달이다. 전자상거래의 보급, 경쟁규범의 확산 등을 통해 세계가 빠른 속도로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고 지식과 정보가 부가가치 창출의 주요 원천이 되는 지식정보혁명 시대를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시장경제를 확고히 정착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경제의 창달은 독과점화된 시장구조의 개선이나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를 차단하는 노력과 함께 시장 내에서 행해지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시킴으로써 공정한 경쟁질서의 토대를 구축할 때 가능하다.

특히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의 근절은 대기업과 함께 21세기 우리경제를 이끌어갈 양대축으로서의 중소, 벤처기업의 건전한 발전과도 직결된다.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중 하도급 거래에 종사하는 기업이 71%가 넘

고 중소하도급업체의 거래모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83%에 이르는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정착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또한 건전한 하도급질서의 정착을 통해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시키는 일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의 건전한 버팀목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인간의 얼굴을 가진 시장경제」를 창달하는 첨경이 된다.

지난 4월18일 우리 위원회 업무보고시 대통령께서 하도급제도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시면서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간에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당부하신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이런 의식에서 우리 위원회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직권실태조사를 확대하여 실시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는데 하도급 집행의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지난해 원사업자 1천개, 수급사업자 2천개 업체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대규모 서면실태조사는 큰 성

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총 635개 원사업자의 법위반행위 총 1천385건을 적발하여 시정조치함으로써 다양한 법위반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조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다같이 하도급법령과 관련 제도의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원사업자의 법준수의식과 수급사업자의 권리의식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미지급한 어음할인료 등 522억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자진지급하여 1만2천465개 업체가 혜택을 보았으며, 직권조사의 확대실시에 따라 처음부터 현금지급조건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도급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업체가 늘어나는 등 사전 예방효과도 커졌다.

금년에는 조사대상업체를 대폭 확대하여 5월부터 2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직권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 또한 조사대상업체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인터넷 조사방식의 도입과 민간조사전문기관에 대한 아웃소싱 등으로 대처함으로써 조사의 효율성을 기해 나갈 것이다.

특히 금년도 조사부터는 현금결제비율 유지, 어음만기일 제한 등 지난해 새로 도입한 하도급대금 결제방식의 조기정착을 위해 그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을 제고하여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월에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구매자금용·기업구매전용카드 등 어음대체결제수단

의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세금감면·세무조사시 우대 등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키로 한 바 있다. 우리 위원회도 4월1일부터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치시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재비율이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부과 등 제재조치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정착은 정부당국의 노력만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소하도급업체들은 우리 위원회에 원사업자로부터 당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적극 신고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우리 경제가 「인간의 얼굴을 가진 시장경제」로 발전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의 서면직권실태조사에서는 중소하도급업체들의 보다 더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이제 원사업자들도 중소하도급업체를 공존공영을 위한 대등한 협력자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중소하도급업체의 성장과 발전없이는 궁극적으로 원사업자 자신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협력적 대·중소기업 관계의 강화라고 하는 시대적 요청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